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상품 관련 주요 QA

2019. 10. 7.

목 차

1. 상품 일반

1.	일반적인	보증부	대출에	비하여	이번에	출시하는	특별	보	증
	대출의 특	·징은? ···	•••••				•••••	••••	1
2.	보증대출을	을 이미 여	이용중인	경우에	도 이용이] 가능한지	···	•••	2

2. 지원요건 및 신청관련

1.	창업 이후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	2
2.	기업이 성장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3
3.	온라인 기업은 모두 이용 가능한지?	3
4.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3
5.	온라인 사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4

1. 상품 일반

- 1. 일반적인 보증부 대출에 비하여 이번에 출시하는 특별 보증 대출의 특징은?
- □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 보증대출보다 **저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심사요건 완화 등으로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
 - 금리가 2.5% 내외(2.33~2.84%)로 통상 2.95~3.98%인 일반 보증 대출상품* 보다 낮음
 - * 전국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금리(보증서담보대출)('19.6~8월, '19.9월 공시)
 - ② 보증비율을 95~100%로 운영하여 일반보증의 보증비율 85%에 비해 10~15%p 우대지원하여 대출 문턱을 완화
 - ❸ 다른 사업자 대상 상품에 비해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구분	일반 보증 대출	특별 보증 대출
5천만원 이하	게다 메그세 이참 참드러기	업력, 신용등급 등 최소기준에 의한 완화된 심사
5천만원 초과	재단 내규에 의한 한도평가	재단 내규에 의한 한도평가의 120% 우대지원

2. 보증대출을 이미 이용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추가 보증 이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 업력 및 자격요건 >

- 1. 창업 이후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
- □ 개업 후 3개월 경과한 기업은 신청 가능하며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다만, 업력이 단기간으로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화능력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증빙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2. 기업이 성장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 □ 동 상품은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대금을 수취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지워하고자 하는 것으로
 -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온라인 사업자는 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하며,
 - 3년 이상의 장기 영위 사업자로서 대출 심사결과 5천만원 이내 승인된 경우에는 1천만원~2천5백만원 추가한도 우대*받을 수 있음(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한도우대 가능)
 - * 신용상태 및 매출액 상황에 의해 우대 적용에서 제외 가능

3. 온라인 기업은 모두 이용이 가능한지?
□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온라인 사업자에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사업자는 이용 가능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거나,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기타요건 >
1.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자이내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 없음
 다만, 파산, 회생, 신용회복절차 중이거나, 연체, 체납 등 신용상태 악화가 지속 중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2. 온라인 사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¹ 신용보증신청서, ² 기업 실체 및 거주지 확인, ³ 매출액 및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
* 정확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위한 부득이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 ① 신청인이 대출받을 금융회사* 지점 날인 있는 신용보증신청서 * (서울)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 은행, (경기) NH농협은행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거주지), 최근 1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 * 최근 1년이내 거주지 이전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필요
- ❸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방세완납증명, 국세납세증명
-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등 필요